

의안번호	2207385
의 퇴 인	김영호의원
회 답 일	2025.1.14.
추계번호	25D0131
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의3 (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)	방위협의회는 지역·직장 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의 심의와 지역·직장 방위에 관한 교육·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,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위협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위협회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, 방위협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14조의3 (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방위협회의의 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- 현재 지역방위협회의는 광역시·도 17개, 시·군·구 226개, 읍·면·동 3,501개가 조직되어 있음

[표 1] 지역방위협의회 조직 현황

(단위: 개, 명)

	특별(광역)시·도		시·군·구		읍·면·동	
조직 (개)	17		226		3,501	
	특별(광역)시	7	자치시	75	읍	232
	특별자치시	1	자치군	82	면	1,180
	(특별자치)도	9	자치구	69	동	2,089

자료: 국방부

□ 지역(직장)방위협의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없으나 시·군·구 이상 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¹⁾ 및 제7조²⁾ 및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근거한 재정지원 규모는 파악이 곤란함

- 「예비군법 시행령」 제37조³⁾에 근거하여 방위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차례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하게 되어 있으므로 평균 4회에서 12회까지 실시되고 있음
- 참고로, 방위협의회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·군·구 이상 633회,

1)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(지역 통합방위협의회)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소속으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시·도 협의회"라 한다)를 두고, 그 의장은 시·도지사가 된다. <개정 2013.3.22.>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, 그 의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- ③ 시·도 협의회와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·도 협의회에 한한다. <개정 2024.1.16.>
 - 1.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(이하 "취약지역"이라 한다)의 선정 또는 해제
 - 2. 통합방위 대비책
 - 3.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
 - 4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
 - 5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
 - 6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2) 「통합방위법」 제7조(협의회의 통합·운영) 중앙협의회,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6.5.29.>

- 1.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
- 2. 「민방위기본법」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

3) 「예비군법 시행령」 제37조(회의)

-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
-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읍·면·동 8,047회 실시되었음

-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은 각급 행정구역별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협의회에 대한 재정지원은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,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“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”에 따라 각 행정구역별로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각급 방위협의회의 운영, 구성인원 및 예산지원 현황 관련 자료 취득의 어려움으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